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53924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B

3. 주식회사 동우로테크

4. C

5. 한국전력공사

변론 종결 2017. 11. 17.

판결 선고 2017. 12. 2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42,222,297원 및 그 중 240,829,190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7. 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16. 8. 1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16.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467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주식회사 동우로테크와 피고 A 사이에 2016. 5.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 2) 피고 주식회사 동우로테크는 피고 A에게 2016. 5. 19. 같은 법원 등기와 접수 제284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2016. 8.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C은 피고 A에게 2016. 8. 11. 같은 법원 등기와 접수 제466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주식회사 동우로테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 주식회사 동우로테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피고 A 사이에 2016. 5.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A에게 2016.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293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2011. 3. 7. 피고 A와 신용보증원금 2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3. 7.부터 2012. 3.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9.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6. 제3, 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2. 3. 6.에서 2017. 3. 3.로 순차 연장되었다.

나. 피고 A는 2011. 3. 7. 주식회사 KEB하나은행(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6.로 하여 대출받았고, 위 변제기가 2017. 3. 3.로 순차 연장되었다.

다. 1) 피고 A는 2016. 7. 7.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6. 9. 6. 하나은행에 피고 A의 잔존 대출원리금 241,999,600원(= 원금 240,000,000원 + 이자 1,999,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은 242,222,297원(= 240,829,190원(대위변제금 241,999,600원 - 피고 A가 변제한 1,170,410원) + 1,392,787원(원고가 구상채권보전을 위해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1,410,946원 - 피고 A가 변제한 18,159원) + 확정지연손해금 320원)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피고 A가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2. 피고 A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46748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우로테크(이하 '피고 동우로테크'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9. 피고 A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9. 같은 법원 등기와 접수 제28409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동우로테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1. 피고 A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1. 같은 법원 등기와 접수 제46695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 피고 A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4. 같은 법원 등기와 접수 제29370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한국전력공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B, 동우로테크, C, 한국전력공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5)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아래 표와 같다.

○ 원주시 D 공장용지 5,225m²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4. 1. 28.	720,000,000	피고 A	국민은행	D, E 공동담보
2015. 11. 11.	200,000,000	피고 A	F	
2016. 8. 12.	48,000,000	피고 A	피고 B	

○ 원주시 G 공장용지 6,965m²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014. 1. 28.	720,000,000	피고 A	국민은행	D, E 공동담보
2015. 12. 9.	200,000,000	피고 A	H	
2016. 5. 19.	150,000,000	피고 A	피고 동우로테크	
2016. 8. 11.	36,000,000	피고 A	피고 C	

○ 원주시 I 공장용지 3,287m² 및 지상 건물(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공시지가 토지 488,776,900원, 건물 163,527,471원)

2005. 4. 8.	500,000,000	J	국민은행	토지, 건물 공동담보
2006. 6. 5.	120,000,000	J	농협은행	토지, 건물 공동담보
2006. 11. 17.	192,000,000	J	농협은행	토지, 건물 공동담보
2015. 6. 15.	500,000,000	A	H	토지, 건물 공동담보
2016. 5. 24.	120,000,000	A	한국전력공사	토지, 건물 공동담보

[인정 근거] 피고 A, B, 동우로테크, C: 자백간주

피고 한국전력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7. 2. 14.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더 크다는 이유로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비용 합계 242,222,297원 및 그 중 대위변제한 금액인 240,829,1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7.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 구상금채권은 피고 A가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6. 7. 7.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원고는 피고 A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6. 6. 28.경에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피고 동우로테크, 한국전력공사의 각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역수상 뒤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채무발생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을바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실, 2015. 8.경

전기요금 22,278,580원을 미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동우로테크, 한국전력공사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 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 2) 피고 A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담보물인 각 부동산들에 마쳐져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각 담보물의 가치를 상회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 B, 동우로테크, C, 한국전력공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A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전기를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A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2)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등이 아니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 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바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하는 K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12. 18. 당시 전기료 106,535,950원, 2016. 1. 28. 당시 전기료 112,500,000원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피고 A에게 체납 전기료를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 A는 2016. 5. 24.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A는 2016. 8. 8.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A가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 공급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 A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전기료 및 장래의 전기료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16. 8. 1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16.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467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동우로테크와 피고 A 사이에 2016. 5.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동우로테크는 피고 A에게 2016. 5. 19. 같은 법원 등기와 접수 제284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③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2016. 8.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2016. 8. 11. 같은 법원 등기와 접수 제466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동우로테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상구

판사최민석

판사신세희

별지